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 하나 대한민국
	보도	2020.12.1.(화) 14:00부터	배포	

책 임 자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김 종 훈(02-2100-2990)	담 당 자	서 병 윤 사무관 (02-2100-2991) 최 준 필 사무관 (02-2100-2994)
	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윤 상 기(02-2100-2630)		김 영 근 사무관 (02-2100-2642)
	기재부 자금시장과장 심 규 진(044-215-2750)		유 근 정 사무관 (044-215-2755)
	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장 홍 성 철(044-205-3941)		한 상 정 사무관 (044-205-3949)
	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서 준 한(044-201-1751)		최 수 연 사무관 (044-201-1760)
	해수부 수산정책과장 권 순 욱(044-200-5420)		박 천 일 서기관 (044-200-5429)
	산림청 산림정책과장 하 경 수(042-481-4130)		임 창 옥 서기관 (042-481-4037)
	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 한 흥 규(02-3145-8070)		박 현 섭 팀장 (02-3145-8072)
	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장 엄 주 동(02-3145-8160)		정 미 선 팀장 (02-3145-8763)

제 목 :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은 높이고 업권간 규제차이는 없애 나가겠습니다. [「상호금융정책협의회」 개최]

1 | 개 요

□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 등*은 12.1일(화), 「2020년 상호금융정책 협의회**」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현황을 점검하고,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이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.

* 기재부, 행안부, 농식품부, 해수부, 산림청, 금감원

** 상호금융권 규제·감독체계 정비 및 정책공조 활성화를 위해 매반기 개최

- 일시 : '20.12.1(화) 14:00~15:30 / 장소 : 영상(코로나 19 감안)
- 참석 : 금융위 금융산업국장(주재)·중소금융과장·금융소비자정책과장, 기재부 자금시장과장,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장,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, 해수부 수산정책과장, 산림청 산림정책과장, 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·검사국장, 5개 상호금융업권 임원 등
- 논의안건 : ①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점검 및 감독방향
②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강화 및 규제차이 해소방안 등

2 논의 주요내용

1.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점검 및 감독방향

(1) 검토배경

□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*이 증가하고 있어, 건전성리스크를 점검하고 향후 감독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.

* 연체율(%) : ('16) 1.21 → ('17) 1.16 → ('18) 1.33 → ('19) 1.75 → ('20.6) 2.14
고정이하여신비율(%) : ('16) 1.41→('17) 1.39→('18) 1.58→('19) 2.08→('20.6) 2.42

① 지방조합들이 부동산 관련 업종 중심으로 공동대출*(20.9월 현재 14.5조원)을 급속히 늘리고 있어 향후 리스크 증가

* 연도별 증가율(%) : ('16년) 44.0 → ('17년) 26.4 → ('18년) 13.3 → ('19년) 17.2 → ('20.1~9월) 27.8
부동산 관련 업종 연체율(%) : ('18년말) 1.99 → ('19년말) 2.72 → ('20.9말) 2.97

② 상호금융중앙회 자산운용 시 파생결합상품, SOC 등 대체투자*(20.9월 현재 18.1조원**)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잠재손실 관리 필요

* 대체투자 비중(%) : ('16말) 9.1→('17말) 12.6→('18말) 14.1→('19말) 13.6→('20.9말) 12.6

** 파생결합상품(6.9조원, 37.9%) > 사모펀드(4.3조원, 23.8%) > 부동산(3.4조원, 19.0%) 등 순

(2) 논의사항

① 공동대출 취급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합 자체 여신심사 및 중앙회의 지도·감독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.

① 조합 차원에서 사업 타당성 분석, 차주 신용리스크 평가, 사후 신용상태 변화 점검 등 여신심사 프로세스를 관련 규정*에 반영

*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(새마을금고 반영은 행안부 협의)

② 중앙회 차원에서 공동대출 관련 지도·감독 업무를 선제적으로 강화*하여 고액대출 부실을 사전에 예방

* 예) 신탁중앙회는 10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 취급시 리스크요인 사전 검토제도 운영중

② 대체투자에 대한 중앙회의 내부통제 및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고, 상시감시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.

① 중앙회 차원의 대체투자 가이드라인* 마련

* 현재 자산운용사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부문 대체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

② 대체투자 등 고위험투자에 대한 대체투자 업무보고서* 신설

* 「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대체투자 업무보고서 신설(안) 사전예고중(20.10.27)

2.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강화 및 규제차이 해소방안

(1) 검토배경

□ 상호금융업권과 타 업권, 상호금융업권 내에서도 적용되는 규제의 정도가 다르다는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.

① 타 업권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된 건전성 규제*로 자금수요가 상호금융업권에 집중될 경우 금융시스템 불안요인으로 작용 가능

* 예) 저축은행 등 타 금융업권은 거액여신·특정업종에 대한 대출집중을 관리하기 위한 편중여신 방지 제도가 있으나 상호금융업권에는 없음

- ② 상호금융업권 내에서도 규제차이*가 존재하고 있어 상호간의 불공정경쟁에 대한 우려도 있음

* 예) 농·수협, 산림조합은 상환준비금의 100%를 중앙회에 예치해야 하는 반면, 신협, 새마을금고는 50%만을 중앙회 의무예치

(2) 논의사항

- ① 자금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건전성 규제를 상호금융업권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.

- ① 거액여신과 특정업종에 대한 대출집중 관리를 위해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편중여신 방지 제도 도입

- (거액여신한도 규제) 자기자본의 10%를 초과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정의하고,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

- (업종별 여신한도 규제) 부동산업·건설업에 대해 각 총대출*의 30% 이내로,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% 이내로 설정

* 총대출 : 대출 + 어음할인

- ② 상호금융기관에의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

- 잔존만기 3개월내 유동성부채(예·적금, 차입금) 대비 유동성자산(현금, 예치금 등) 비율 100% 이상* 유지

* 규제비율 도입시 자산·부채의 만기구조 재분배 및 기존 한도초과분 해소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, 유예기간(예:3~5년)을 부여하는 등 단계적 도입 추진

- ②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기관별 상환준비금 및 조합 배당제도 등 규제차이 완화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.

- ① **신협·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*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을 50% → 80%로 상향 검토**(현재 농·수·산림조합은 100% 중앙회 의무예치)

* 상호금융기관은 상환준비금으로서 **예탁금·적금 잔액(전월 말일 기준)의 100분의 10 이상을 매월 말일 보유**할 의무, 그 중 일정비율을 중앙회 예치

- ② 타 상호금융업권을 참고하여 신협의 **배당상한선***을 **표준정관****에 명시함으로써 **조합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**

* Min [조합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결산기준 연 평균금리 + 2%p, 5%]

** 현재 신협은 "표준정관"이 아닌 "결산지침"에 배당금 지급한도 규정

3. 상호금융업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

(1) 검토배경

□ 지난 10월 입법예고된 「**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**」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으로 ‘**신협**’을 규정하고,

- **신협 외 상호금융**(농협, 수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)은 **감독체계*의 특수성을 감안***하여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.

* [현행 상호금융기관 신용사업 건전성 감독체계] **금융위가 감독**은 수행하지만,(새마을금고의 경우 중앙회장이 수행) 그에 따른 **기관 조치 권한은 없음**

□ 그러나 **신협 외 상호금융**은 주 고객이 **보호 필요성이 큰 서민인 만큼**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같은 **소비자보호 법적기반이 필요한 상황**입니다.

(2) 논의사항

□ **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“동일기능-동일규제”의 구현과 관련하여** 향후 입법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.

- 특히 「**금융소비자보호법**」상 규제 적용 시 고려해야 할 **신협 외 상호금융의 특수성,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감독체계 운영 방향**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.

4. 상호금융업권 디지털금융 추진동향

□ 상호금융업권의 디지털금융 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, 고령층에 대한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.

① ‘20.12월,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*도 오픈뱅킹에 참여

* 신협, 농협, 수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, 우체국(총 6개)

- 향후 개별 금융기관 및 핀테크 앱(App)을 통해 신협, 농·수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, 우체국 금융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.

② 고령층 등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‘찾아가는 서비스’인 태블릿 브랜치* 운영 지속 확대

* 전자펜으로 필기가 가능한 태블릿PC를 활용해 지류 대신 전자화면에서 고객 정보 등록, 상품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, 신분증 스캔 등이 가능한 서비스

-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상담업무, 고객 신규등록, 여·수신 상품 및 전자금융 가입, 신용카드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.

태블릿브랜치 운영현황

구분	신협	농협	수협	산림조합
구축시기	'20.8월	'17.11월		
운영대수	214대	3,144대		
주요기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조합원 가입 ✓ 수신 신규 가입 ✓ 입출금 및 송금* ✓ 대출상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신규고객 등록 ✓ 수신, 여신 및 전자금융, 신용카드 가입(접수) 	미운영	미운영 (도입계획은 있으나 일정미정)

* 현금수납을 위한 별도 금고 휴대(파출수납)

3 | 향후 계획

□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과의 협의를 거쳐 상호금융업권 규제 차이 해소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.

○ 신협법 개정을 통해 거액여신한도 및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,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 추진

○ 신협 표준정관 개정을 통해 단위신협의 배당상한선 명시

-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추가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.
 -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상호금융권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원칙·기준 명시
 - 대체투자 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
- 상호금융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향후 관계기관 간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 시행 전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
- 상호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.

< 금융 용어 설명 >

- **공동대출** : 2개 이상의 조합이 동일 채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물건에 동일 순위로 근저당권(신탁수익권 포함)을 설정하여 취급하는 담보대출 (일종의 신디케이트론)
- **대체투자** : 기존의 전통적인 투자(주식, 채권 등) 이외의 새로운 투자를 통칭하는 용어로 파생결합상품, 부동산, SOC, 사모펀드 등이 해당
- **오픈뱅킹** : 개별금융기관 및 핀테크업체가 오픈 API*를 통해 모든 금융 기관 업무를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, 현재 6개의 API** 제공中
 - * 오픈 API(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) : 데이터나 서비스를 외부에서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개 응용 프로그램 기술
 - ** (조회) 잔액, 거래내역, 계좌실명, 송금인정보 (이체) 출금, 입금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
--	---	--	---	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